

예 산 총 칙

제 1 조 (총칙) 2024년도 영주시 제1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,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 현금 흐름표는 다음과 같다.

가. 추정손익계산서

차 변		대 변	
비 용	순이익	수 익	순손실
11,440,395천원	0천원	11,374,077천원	180,014원

나. 추정재무상태표

차 변	대 변	
자 산	부 채	자 본
153,700,076천원	732,701천원	152,967,375천원

다. 추정현금흐름표(자금계획서)

과 목	금 액
Ⅰ.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66,318)천원
Ⅱ.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(33,321,808)천원
Ⅲ.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	27,678,066천원
Ⅳ. 현금의 증감(Ⅰ + Ⅱ + Ⅲ)	(5,710,060)천원
Ⅴ. 기초의 현금	5,710,060천원
Ⅵ. 기말의 현금	0 원

제 2 조 (업무의 예정량) 업무의 예정량은 다음과 같다.

가. 급 수 전 수 : 28,536전 나. 연 간 생 산 량 : 14,919천 m³

다. 1일 평균생산량 : 40.9천 m³

제 3 조 (수익적수입 및 지출) 수익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수 입		지 출	
제 1 관 상수도사업수익	11,374,077천원	제 1 관 상수도사업비용	11,440,395천원
제 1 항 영 업 수 익	11,179,103 "	제 1 항 영 업 비 용	11,202,598 "
제 2 항 영 업 외 수 익	194,974 "	제 2 항 영 업 외 비 용	0 "
제 3 항 특 별 이 익	0 "	제 3 항 예 비 비	237,797 "

제 4 조 (자본적수입 및 지출) 자본적수입 및 지출의 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자본적수입액이 자본적지출액에 대하여 부족한 금액 (66,318)천원은 상수도 사업수익액 (66,318)천원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한다.

수 입		지 출	
제 1 관 자본적수입	33,625,923천원	제 1 관 자본적지출	33,559,605천원
제 1 항 고정자산매각수입	0 "	제 1 항 유형 자산 취득	29,997,584 "
제 2 항 비유동부채수입	0 "	제 2 항 비유동부채상환금	0 "
제 3 항 자본잉여금수입	27,915,863 "	제 3 항 비가동설비자산취득	3,296,000 "
제 4 항 유 보 자 금	5,710,060 "	제 4 항 기타자본적지출	28,224 "
		제 5 항 예 비 비	237,797 "

제 5 조 (계속비) 계속비의 총액과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관	항	사 업 명	총 액	연 도	연 할 액
		해 당	없 음		

제 6 조(채무부담행위)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과 기간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사	항	기	간	한	도	액
		해	당	없	음	

제 7 조 (지방채) 공기업채 발행을 위한 기채의 목적, 한도액, 기채의 방법,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기 채 목 적	한 도 액	기 채 방 법	이 자 율	상 환 방 법
	해 당	없 음		

제 8 조 (일시차입금)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,350,000천원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예산전용 금지과목) 다음에 계기하는 과목의 경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다.

(1) 인 건 비 : 3,090,463천원 (2) 업무추진비(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금지) : 9,684천원

제 10 조 (타 회 계 로 부 터 의 보 조 금) 상수도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회 계 로 부 터 이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,300,000천원이다.

제 11 조 (이익잉여금의 예정처분) 이익잉여금 없음

제 12 조 (중요자산취득 및 처분)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종 류	명 칭	수 량	금 액
		해 당 없 음		

제 13 조 (회전기금) 회전기금의 한도액 해당없음

2024. 5. .

영 주 시 장